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6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30일 이내 휴업 시 휴업신고 의무 면제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30일 이내 휴업 시 휴업신고 의무 면제 근거 마련

정부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총 19개 법률에 대해 개정안들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는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¹⁾이 계류된바,

본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30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u>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 1) 우리 위원회에는 산림청 소관 1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개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3개 법률, 해양경찰청 소관 1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계류중임.

연번	소관 부처	대상법률		개정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 <u>30일 이상</u> 휴업 시 휴업신고
2	산림청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3	해양수산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4		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
5		항로표지법	제25조	"
6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 <u>15일 이상</u> 휴업 시 휴업신고

자료 : 산림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 ⑦ (생 략)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바에 따라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일 이상 휴업 ----- ----- 제15조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등 이유로 단기간 일시 휴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적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30일 이내에서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용역업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10월 기준 13개소로 전체 등록자 대비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2020~2024.10월)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휴업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 및 휴업 누계 현황 】

(2024.10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분야	'20년	'21년	'22년	'23년	'24.10월
등록 누계 현황	합계(A)	1,224	1,232	1,348	1,453	1,530
	종합	67	78	85	87	95
	소계	1,157	1,154	1,263	1,366	1,435
	산림경영	523	523	549	577	600
	산림생태·공학	486	488	512	539	556
	산림휴양	47	44	39	44	41
	녹지조경	101	99	163	206	238
휴업 누계 현황	합계(B)	8	8	12	13	13
	종합	0	0	0	0	0
	산림경영	4	4	6	7	7
	산림생태·공학	4	4	6	6	6
	산림휴양	0	0	0	0	0
	녹지조경	0	0	0	0	0
휴업자 비율(B/A)		0.7	0.6	0.9	0.9	0.8

자료 : 산림청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이들의 휴업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자의 수가 많지 않고, 전체 등록자 대비 휴업자 비율과 30일 이내 휴업의 신고자가 미미한 수준²⁾인바,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약사법」³⁾, 「관광진흥법」⁴⁾ 등은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업신고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산림청에서 유사입법례로 제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도 카지노업은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휴업 비율 및 휴업 기간이 해당 업종에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30일 이내 휴업신고 면제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최근 5년간 산림기술용역업자 휴업 누계 현황(p. 4 하단 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54번의 휴업 신고가 있었으며, 전부 30일 이상의 휴업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3)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⑧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0일 이내 휴업 시 휴업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 유사입법례,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휴업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